

의안번호	제2672호
의 결	2023.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정영환 의원 등 3인
발의연월일	2023. 9. 27.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정영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72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정영환, 김향숙, 우정욱 의원(3인)

찬 성 자 : 이쌍자, 김원순, 허옥희 의원(3인)

1. 제안이유

고성군 관내에서 경로당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34호

- 예고기간: 2023. 9. 27.(수) ~ 2023. 10. 6.(금) [9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시설
2.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
3. 6개월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미등록 경로당 양곡비
4. 미등록 경로당 위문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